

생존연금보험의 보험금청구권과 가산금의 소멸시효

임 채 욱*

<차례> _____

- | | |
|---------------------|------------|
| I. 서론 | IV. 사안의 검토 |
| II. 생존연금보험의 특수한 사례 | V. 결론 |
| III. 생존연금보험의 보험금청구권 | |
-

주제어 : 생존보험, 연금보험,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소멸시효의 기산점, 지급지체

<국문초록> 통상 연금보험은 일정 연령 이후의 장래의 경제적 상실에 대비하여 피보험자의 생존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자금을 지급받을 것을 약정하는 보험을 일컫는다. 대표적인 연금보험이 생존보험이다. 생존보험은 보험계약 체결 시의 피보험자의 상태 즉 생존이라는 상태가 일정 기간 이후 까지 지속되는 것을 보험사고로 하여 성립되는 보험계약이다. 손해보험에는 이러한 유형의 보험계약은 존재하지 않으며, 인보험에도 생존보험이 유일하다. 결과적으로 생존보험은 다른 모든 보험계약과 달리 유일하게 상태변화가 없는 것을 보험사고로 하는 이질적인 보험계약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법은 생존을 보험사고로 할 수 있다는 규정 외에 생존보험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생존보험에 대한 논의 역시 미비한 실정이다. 생존보험은 장래의 경제적 안정이라는 취지에 따라 고이율의 가산금을 부가하는 약정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 가산금의 부가와 관련하여 소멸시효가 문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생존연금보험의 특성과 법적 성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한 바, 생존연금보험의 지급을 둘러싸고 생존연금보험 보험사고의 특성, 소멸시효 기산점, 보험금에 부리되는 가산금(이자)의 소멸시효 등 다수의 논점에 대해 최근 사례를 바탕으로 고찰해보고자 한다.

* 법학박사, 노무법인 동국, 보험분쟁조정연구부, 수석연구원.

- 논문접수일(2017.11.29), 심사개시일(2017.12.23), 게재확정일(2017.12.27)

I. 서론

보험계약 중 인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관하여 발생하는 보험사고에 대해 보험자가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지급할 책임을 가지는 보험계약으로 정의된다(상법 제727조). 인보험계약은 다시 보험목적과 보험사고에 따라 피보험자의 생명이 보험의 목적인 경우 생명보험으로, 피보험자의 신체에 발생할 수 있는 상해 및 질병이 보험의 목적인 경우 각각 상해보험 그리고 질병보험으로 분류된다. 피보험자의 생명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 생명보험은 일반적으로 생명을 잃는 것을 보험사고로 인식하지만, 반대로 생명이 존속하는 것을 보험사고로 규정할 수도 있다. 생존을 보험사고로 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형태의 보험계약을 생존보험으로 분류한다. 보험사고의 관점에서 보면, 생존보험계약은 물보험을 포함한 전체 보험계약 종류 중 가장 이질적인 유형으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보험사고는 보험계약 체결 시의 보험목적물 또는 피보험자의 상태가 예상치 못한 사유로 변하거나 소실되는 것으로 정의된다. 그러나 생존보험의 경우는 이와 반대로 보험계약 체결 시 피보험자의 상태 즉 생존이라는 상태가 일정 기간 이후 까지 지속되는 것을 보험사고로 하여 성립되는 보험계약이다. 물보험에는 이러한 유형의 보험계약이 일절 존재하지 않으며, 인보험에도 생존보험이 유일하다. 결과적으로 생존보험은 다른 모든 보험계약과 달리 유일하게 상태변화가 없는 것¹⁾을 보험사고로 하는 이질적인 보험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법은 생존을 보험사고로 할 수 있다는 규정 외에 생존보험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생존보험에 대한 논의 역시 미비한 실정이다. 생존보험은 그 특성상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장래 경제적 안정을 위해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일시금보다는 이자를 부리하여 증가시킨 보험금액을 분할하여 연금으로 지급받는 형태로 체결되는 경향이 있다. 연금보험 형태의 생존보험은 10년 이상의 장기보험으로 보험료의 분납, 보험금의 분할지급을 특징으로 한다. 그러나 보험료의 분납과 보험금의 분할 지급이 가지는 의미, 위험의 측정과 책임의 확정에 대해 보험자는 물론이고 감독기관 조차도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생존연금보험의 특성과 법적 성질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기에

1)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연스러운 노화는 상태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발생하는 문제로 생존연금보험의 지급을 둘러싸고 연금보험 보험사고의 특성, 연금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보험금에 부리되는 가산금(이자)의 소멸시효, 약관의 해석원칙 및 소멸시효 주장의 권리남용 문제 등 다수의 논점이 복합적으로 존재한다. 최근 생존연금보험의 지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례를 바탕으로 각 논점에 관해 제고해보고자 한다.

II. 생존연금보험의 특수한 사례

1. 생존연금 보험금청구권의 행사시점과 소멸시효

최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사안으로, 신청인(보험계약자)가 생사 혼합형연금(생존)보험의 연금이 개시된 후 초회 연금을 수령하고(2012년 9월), 이후 차회(2013년 9월)차 부터 연금을 청구하지 않은 상황에서 보험자가 소멸시효를 이유로 미지급 보험금에 복리로 부리되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하여 발생한 사안이 있다.²⁾ 본 사안에서 조정 신청인(보험계약자)은 “이자(가산금)의 지급은 약관으로 정한 부분이나, 소멸시효는 약관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보험자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³⁾ 이에 대하여 보험자는 “소멸시효에 대한 내용이 약관에 존재하지 않는 것은 맞으나 동 약관은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른다는 조항을 두었으므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규정한 상법(제662조)에 따르면 3년⁴⁾이 경과한 미청구 보험금에 대해서는 지

2) 해당 조정 건은 조정 결정 전에 당사자의 합의로 조정을 취하여 사례가 공개되지 않았다.

3) 해당 보험계약의 보험금지급에 관한 약관은 다음과 같다.

제23조(보험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22조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드리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할 때에는 접수후 10일 이내에 보험금을 드리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⑥ 생존연금, 배우자연금, 여행자금, 배우자 여행자금, 장수축하금, 배우자 장수축하금, 제2회 이후에 지급되는 유족연금 또는 해약환급금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정이율 +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급의무가 없다'고 항변하였다. 또한 보험자는 “미청구 보험금에는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고, 이자(가산금)에만 소멸시효를 적용하겠다고 한 것으로 오히려 시혜적인 조치였다'고 항변하였다.

신청인(보험계약자)와 피신청인(보험자) 각자의 주장만을 보면 본 사안의 주요 논점은 약관에 따라 미지급보험금에 부리되는 이자에 대해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될 것이다. 그러나 조금 더 근본적인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본다. 본 사안의 보험계약은 일명 생사혼합형개인저축연금보험으로 보험기간을 이분화하여 사망 또는 장애 등을 보험사고로 하는 제1보험기간과 장애를 포함한 생존을 보험사고로 하는 제2보험기간으로 나누어 제1보험기간에는 생명보험금을 연금의 형태로 지급(유족연금)하고, 제2보험기간에는 생존 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⁵⁾ 특히 제2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생존연금 지급은 일정 연령 이후의 생존을 보험사고로 하여 보험금을 분할 지급하는 전형적인 생존연금보험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문제는 보험자가 제2보험기간의 생존연금을 매년 반복하여 직접 청구하도록 한 점에서 발생한다. 보험자는 신청인이 제2보험기간의 시작 일에 초회 생존연금을 수령한 후 2회차 부터 연금의 청구를 하지 않고 2년 이상 경과한 것을 보험금청구권의 미행사로 보아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요건이 성립하였다고 보았다. 보험자는 생존연금의 보험금청구권은 매 연금 지급일 마다 새로 발생하는 권리이며, 보험사고인 생존을 증명해야 하는 것으로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험자가 '2회차를 포

4) 2015년 3월 12일 개정 상법 시행 전 연금의 경우 소멸시효 2년을 주장하였다.

5) 해당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에 관한 약관은 다음과 같다.

제 1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제1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거나 장애분류표중 제1급의 장애상태가 되었을 때 : 유족연금 지급 2. 제1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별표2(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이하재해라 합니다)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장애분류표 중 제 2급 내지 제 6급의 장애(이하장애라 합니다)상태가 되었을 때 : 장애급여금 지급 3. 제2보험기간중 주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 생존 연금 지급(다만, 10차년도 생존연금까지는 보증지급) 4. 부부형의 경우 제2보험기간중 종피보험자만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 배우자연금 지급 (다만, 제1보험기간중 주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배우자 연금이 지급될 경우 10차년도 배우자연금까지는 보증지급) 5. 제 2보험기간 개시일에 주피보험자가 살아 있을 때 : 여행 자금지급 6. 부부형의 경우 제 2보험기간 개시일에 종피보험자만 살아있을 때 : 배우자 여행자금 지급 7. 제2보험기간중 주피보험자가 장수축하금 지급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 장수 축하금 지급 8. 부부형의 경우 제2보험기간중 주피보험자 장수축하금 지급 해당일에 종피보험자만 살아있을 때 : 배우자 장수축하금 지급

함한 미청구 보험금에는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은 시혜적 조치라고 항변한 부분에서 이러한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보험자의 이러한 전제는 생존을 매년 새로이 일어나는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때 가능한 것인데 상법은 생존을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계약의 체결이 가능하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생존에 대해서는 해석을 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생존이 일반적인 보험사고와 같은 해석론을 적용하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보험사고란 일반적으로 보험계약 체결 시의 보험목적물 또는 피보험자의 상태가 예상치 못한 사유로 변하거나 소실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생존은 피보험자의 상태가 변하거나(상해, 질병 등) 소실(사망)에 이르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생존은 일정한 연령을 넘어서까지 피보험자의 신체가 일정한 상태(건강)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일반적인 보험사고와 동일한 기준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원론적인 관점에서 당사자의 주장이 가능한지 여부부터 조명해볼 필요가 있다. 법리적인 관점에서 당해 사안은 미지급 보험금에 부리되는 이자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논하기 이전에 생존연금 보험금청구권의 법적 성질과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일차적으로 논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2. 연금에 부리되는 가산금의 소멸시효

본 사안에서 피신청인은 미지급 보험금에 부리되는 가산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장래에는 가산금이 지급되지 않음을 통지하였다. 신청인은 가산금의 소멸시효의 완성이 약관에 없는 내용이므로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 원칙적으로 소멸시효는 법률로 정하고 있으므로, 약관에 기재하지 않는다 하여도 계약 위반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볼 것이다. 그러나 본 사안에서는 미지급 보험금에 이자를 부리하여 보험금 지급시 가산한다는 약관의 규정(상품약관 제23조 제3항)을 두고 있는 바⁶⁾, 이러한 내용을 인지한 신청인이 이자의 부리를 통해 고이율의 수익을 얻는 목적으로 2회차부터 연금의 지급을 신청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 경우 연금을 신청하지 않고 이자의 부리 즉 가산금으로 인한 수익을 얻고자 하는 신청인의 부작위가 일종의 선택권의 행사가 될 수 있는지를

6) 각주 3) 참조

고려해볼 수 있다.⁷⁾ 만약 그러한 권리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피신청인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의 타당성에 대해서도 재고해 보아야 한다.

Ⅲ. 생존연금보험의 보험금청구권

1. 생존연금보험 고유의 특징

(1) 생존보험의 보험사고

보험사고는 보험자의 책임을 발생시키는 조건이 되는 사건으로써 위험(Risk, Risiko)이라고도 하며, 학계에서는 위험의 실현이라고 설명하기도 한다.⁸⁾ 보험목적에 손해 또는 피해를 야기하는 사고로써, 그 발생에 의해서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책임이 구체화 되는 사실관계를 말한다.⁹⁾ 보험사고는 보험계약의 필수적 요소로써 '위험이 없으면 보험도 없다(Ohne Gefahr, keine Versicherung)'는 표현으로 설명하기도 한다.¹⁰⁾ 궁극적으로 보험은 보험사고로 구체화되는 위험으로부터 경제적 보호 내지는 재무적 안정을 취하기 위한 수단이다.¹¹⁾ 법률에서는 위험이라는 표현(상법 제647조, 제652조 등)과 보험사고라는 표현(상법 제644조)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다. 엄밀히 말해 보험으로 부보호하고자 하는 어떠한 사건(Event)이 현실화되기 전에는 위험으로 설명하며, 현실화 되어 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실관계가 되면 보험사고로 지칭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보험사고는 발생 가능성이 불확정하고 우연하여야 하며(불확정성), 동시에 발생 가능한 사건이어야 한다(발생가능성). 또한 사고의 범위는 계약 시에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며(특정성), 약정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만 보험자의 책임요건이 된다. 보험사고의 요건은 강행규정으로 보험사고는 화재보험에서의 화재와 같이 구체적으로 특정 또는 제한 될 수 있으며, 운송보험이나 해상보험과 같이 운동 또는 항해 도중 발생할 수

7) 최근 금융감독원은 유사한 사례에서 부작위를 일종의 선택권으로 인정한 사례가 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번호 제2017-14호 참조

8) 김은경, 「보험계약법」, 보험연수원, 2016, 123면.

9) 한기정, 「보험법」, 박영사, 2017, 40면.

10) 이기수/최평규/김인현, 「보험해상법」, 박영사, 2015, 81면.

11) 김창기, 「보험학원론」, 문우사, 2015, 26면.

있는 여러 형태의 위험을 포괄적으로 정할 수도 있다.¹²⁾

생존연금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정해진 연령까지 생존하는 것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으로 교육보험, 퇴직보험과 생명연금보험이 이에 속한다.¹³⁾ 생존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일정한 보험기간까지 생존할 것을 보험사고로 하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약정한 보험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보험자에게 보험금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순수한 의미에서의 생존보험계약은 현실적으로 운용되지 않고, 생명연금보험계약이 생존보험의 한 형태로 이용되고 있다.¹⁴⁾

(2) 보험금의 분할지급

보험금은 계약의 내용에 따라 지급형태를 달리 선택할 수 있다.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약정보험금액의 전부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일시금 보험이라고 한다.¹⁵⁾ 원칙적으로 전 보험 분야에서 일시금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분할지급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보험금의 분할지급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자가 보험금을 일시에 지급하지 않고 약정에 따라 보험금액을 분할하여 순차적으로 지급하는 형태로 이용된다. 이러한 지급형태의 보험계약을 연금보험이라고 한다. 연금보험계약은 주로 생명보험분야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연금보험은 생존보험을 통칭하는 표현으로 사용되기도 하며, 보험업감독규정은 1-2조 5호에서 연금보험을 “일정연령이후에 생존하는 경우 연금을 주된 보장으로 하는 보험”으로 정의하고 있다.¹⁶⁾ 인보험에서 연금보험은 피보험자가 일정한 나이가 된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종신토록 보험금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종신연금보험과 생존 중의 일정한 기간 동안만 매년 연금을 지급하는 정기연금보험으로 구분된다.¹⁷⁾ 기존에 상법은 연금보험에 관한 제735조의²¹⁸⁾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를 삭제하고 인보험 통칙 규정인 제727조 제2항을 신

12) 박세민, 「보험법」, 박영사, 2017, 131면.

13) 박세민, 전계서, 886면.

14) 정동운, 「상법(하)」, 법문사, 2008, 704면.

15) 박세민, 전계서, 888면.

16) 금융위원회고시 제2017-28호.

17) 정찬형, 「상법강의(하)」, 박영사, 2016, 788면.

18) 구 상법 제735조의2(연금보험) 생명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생명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 약정에 따라 보험금액을 연금으로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설하여 인보험 전체에서 분할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개정하였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분할지급은 인보험에만 국한되지 않고 기타 보험에서도 분할 지급이 가능하며, 생존보험 또한 일시금 지급이 가능하다.¹⁹⁾ 생존을 보험사고로 하면서 보험금을 분할 지급하는 보험계약은 생존연금보험계약으로 분류된다. 생존연금보험계약은 대표적인 생존보험으로 피보험자가 일정한 연령 이후까지 생존하면 생존시점마다 생존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점을 특징으로 한다.²⁰⁾

(3) 이자의 중요성

생존연금보험계약은 장래의 경제적 안정을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납입 보험료 대비 이자(가산금)의 수익률이 매우 중요하다. 20년 또는 30년 후의 경제상황을 정확히 알 수 없고, 그 정도도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불가인상으로 화폐가치의 하락이 발생할 것은 분명하므로, 미래 화폐가치를 보전하기 위한 이자의 부리 또는 투자수익 배당으로 납입 보험료 보다 많은 금액을 수령할 것을 기대하여 가입하는 특성이 있다. 손해보험은 원칙적으로 이득금지의 원칙(실손보상의 원칙; principle of indemnity)이 적용되며²¹⁾, 일반적인 생명보험도 피보험이익의 산정 없이 정액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므로 보험가입을 통해 손실의 보전을 넘어서는 경제적 이익을 얻는다는 개념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생존연금보험은 납입 보험료 보다 많은 금액을 수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보험가입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실현한다는 개념이 성립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생존연금보험은 같은 목적을 가진 은행의 저축예금상품, 자산연계형보험상품 등과 이율이 비교되며, 높은 이율을 보장하는 저축성보험상품²²⁾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19) 박세민, 전게서, 889면.

20) 김은경, 전게서, 668면; 박세민, 전게서, 888면; 이기수/최병규/김인현, 전게서, 399면; 임용수, 「보험법」, 법률정보센터, 2006, 479면; 정동윤, 전게서, 706면; 정찬형, 전게서, 783면; 한기정, 전게서, 704면.

21) 한기정, 전게서, 413면.

22) 피보험자의 생존 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는 보험상품.

2. 생존연금보험의 보험금청구권과 소멸시효

(1) 생존연금보험의 보험기간

보험계약은 쌍무계약이므로 주요 개념을 채무자 입장에서 설명하고 있다. 보험금 청구권을 개별적인 개념으로 설명하기 보다는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의무에 대한 채권으로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때문에 보험금청구권의 발생 요건과 보험금 지급의무의 발생 요건은 동일하다. 보험금 지급의무는 우선,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지급의무를 이행한 상태(일시납부) 또는 지급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분할납부)여야 한다. 보험자의 책임은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받은 때'로부터 개시하기 때문이다(상법 제656조). 또한 보험사고가 보험기간 내에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²³⁾ 이때의 보험사고는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이 성립한 후의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경우를 의미한다.

생존연금보험계약의 경우 보장 내역에 따라 보험기간을 달리 설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보험기간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자의 책임이 발생하는 시기와 종기까지의 기간으로서 위험기간 또는 책임기간이라고도 한다. 상법은 보험자의 책임은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받은 때로부터 개시한다고 명시(상법 제656조)하고 있으므로 보통의 경우 보험기간의 시기는 이 기준을 적용한다.

보험기간과 구별하여야 할 개념으로 보험계약기간이 있다. 보험계약 기간은 보험계약의 성립 시로부터 그 종료 시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보험기간과 보험계약 기간이 일치하지만 보험기간이 계약 성립 후 일정한 시점으로부터 개시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인보험계약 중 질병보험에 해당하는 암보험, 치과보험, 생존보험에 해당하는 생존연금보험, 운송보험 등은 계약의 성립 후 약정 기간 이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 책임이 개시되므로 보험기간과 보험계약 기간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를테면 생존연금보험계약은 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2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30년이 지난 이후 생존을 보험사고로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그 간극이 매우 큰 보험계약으로 볼 수 있다. 실무적으로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기간을 제1보험기간, 연금이 개시되는

23) 김은경, 전게서, 246면.

시점부터의 기간을 제2보험기간으로 설정한다.²⁴⁾ 제1보험기간에는 피보험자의 사망 시 유족연금 또는 보험금이 아닌 별도의 혜택을 약정하고, 제2보험기간에는 생존연금지급을 약정하는 형태로 보험기간을 분리하고 있다. 생사혼합형연금보험계약이 아닌 생존연금보험계약의 경우 제2보험기간은 실질적 보험기간 즉 책임기간에 해당한다. 따라서 본 시안과 같은 생존연금보험계약은 보험사고인 생존의 발생 시점과 책임기간의 개시 시점이 일치하게 되며, 이 시점 전의 생존 상태는 보험사고로 볼 수 없는 것이다.

(2) 생존연금보험의 보험사고와 보험금청구권

생존연금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생존연금보험은 인보험 중 생존보험(상법 제730조)에 해당하며²⁵⁾ 보험사고는 '생존' 이다. 일반적으로 보험사고는 우연한 사고를 원인으로 하는 상태변화를 전제한다. 그러나 생존은 지속성을 본질로 하는 '변함 없는 상태' 이므로 특정 시점 이후의 지속적인 생존 상태는 매번 새로운 '보험사고' 즉 '상태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생존연금보험은 지급개시 시점에 초회연금을 신청한 것으로써 보험금 청구 절차를 완수한 것이다. 즉 특정 시점에서의 '생존' 이라는 보험사고에 대한 통지의무를 이행한 것이고, 매년 본질적으로 다른 보험사고(생존)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므로 이후에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의 통지의무를 이행할 이유가 없다. 이를테면,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의 보험금을 연금으로 지급받기로 한 경우(유족연금) 연금의 개시 이후 연금 지급 시마다 피보험자의 사망을 증명하러거나, 새로운 사망을 통지해야 한다고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보험사고의 유형과 관계없이 연금보험은 보험금을 분할하여 연금으로 받는 것을 전제로 하는 계약(상법 제727조 제2항)이다. 연금보험이 일반적으로 생존보험과 동일시되는 것은 대개 생존보험이 연금보험으로 설계되어 실무적 편의상 용어를 혼용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생존보험은 생존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의미하며, 연금보험은 보험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보험계약을 의미하는 것으로 양자는 완전히 구별되는 개념이다. 생존과 연금을 반드시 연결시켜야 할 특

24) 박세민, "상법 제735조의2(연금보험) 조문의 해석상 문제점과 그 개정 방안에 관한 연구", 경영법률, 제18권 제1호, 한국경영법률학회, 2007, 6면.

25) 김은경, 전제서, 666면.

별한 이유는 없으며,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연금 개시 이후에 분할 보험금을 지급함에 있어 채권자(보험수익자)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생존연금보험의 경우 보험사고인 생존이 발생하여 초회연금을 청구하였다면, 보험금청구권자는 의무를 다한 것이고 보험자가 지급하는 연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족하다.

(3) 생존연금보험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법률이 3년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소멸시효의 기간 자체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문제는 소멸시효의 기산점이다. 최근 재해사망보험금을 둘러싸고 약관작성자의 책임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 학술적으로 많은 논란을 일으켰고 강한 비판²⁶⁾을 받았으나, 종국적으로는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보아 보험자 측 주장이 인용되었다.²⁷⁾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의 기간 자체는 3년으로 법정되어 있으며, 보험사고 발생 시점부터 기산되는 것으로 판례는 해석 하고 있으나²⁸⁾ 예외가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었고 현재도 지속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는 중이다.²⁹⁾ 법적으로 소멸시효의 법적 성질은 민법에 따라 규정되는 바,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대해 민법 제166조는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법원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법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점(공식적으로 권리를 취득한 시점 등)으로 보며, 이는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일치하는 것으로 판시³⁰⁾하고 있다. 또

26) 이상은 김은경, “보험약관 내용구성의 책임”, 아주법학, 제10권 제1호, 2016, 99면 이하 참조.

27) 2016. 10. 13. 선고 2016다231365 판결; 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6다218713, 218720 판결.

28)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다59383 판결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추상적인 권리에 지나지 아니할 뿐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권리로 확정되어 그때부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해석해야 할 것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보험약관 제27조(보험금지급) 제1항에서 “회사는 손해발생 통지 및 보험약관 제22조의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립니다.”라고, 상법 제658조(보험금액의 지급)에서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약정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제657조 제1항의 통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10일 내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각각 정하고 있다고 하여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위 약관 또는 법률조항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유예기간(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또는 ‘정하여진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진행한다고 볼 수도 없다.)

29) 장덕조, “보험금청구권과 소멸시효”, 금융법연구, 제13권 제3호, 한국금융법학회, 2016, 139면.

한 권리자가 본인의 과실 없이 권리의 존재를 알지 못하거나 취득 가능성 등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여 권리의 소멸시효가 기산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법률상 장애만을 소멸시효 기산의 예외 사유로 보고 있다.³¹⁾ 소멸시효의 기산 시점에 대해 법원은 상당히 엄격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바, 특히 상법의 상소멸시효는 단기소멸시효로 그 적용이 더 엄격하고, 보험금청구권은 예외적으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를 법률로 정하고 있다.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는 약관의 명시와 관계없이 3년의 시효가 적용되는 것이다.

(4) 미수령 보험금에 대한 이자의 부리

생존연금보험계약은 그 특성상 이자의 부리가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가입 목적이 되는 만큼 실제 보험상품은 이자 또는 가산금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약정하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유형으로 미수령 보험금에 복리이자를 부리하거나, 중도지급금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 만기환급금에 복리이자를 부리하는 형태³²⁾가 있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후자의 상품에 관해 중도지급(문화생활자금)을 신청하지 않는 것은 만기에 복리이자를 포함한 만기환급금(만기급여금)을 수령하기 위한 선택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결정한 바³³⁾가 있다. 해당 조정 건(조정번호 제2017-14호)의 경우 생존연금보험이 아닌 저축성생명보험으로 보험기간이 종료할 때 까지 보험사고(사망)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지급하는 만기환급금의 가산금이 문제가 된 사안이다. 원칙적으로는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소멸시효의

30)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다16558 판결,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6878 판결.

31) 서종희,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대한 고찰”, 일감법학, 제37호,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06, 127면.

32) 약관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지급기일까지” 기간 동안 예정이율 +1%(또는 예정이율)의 가산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작성된다.

33)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번호 제2017-14호 (본 결정에서 문제가 된 “문화생활자금”, “만기급여금”의 경우 본질적으로 사고 보험금이 아니라 만기환급금의 일부를 선지급 하는 형태의 금원이라는 점을 주요하게 반영하여 보험금이 아니라고 판단한 점, 보험수익자의 지급청구 시점에 따라 다른 금액을 지급하게 되는 성격이 있는 금원임을 피청구인인 보험자도 알고 있던 점, 해당 보험상품 모집인도 알고 있었으며, 이러한 장점을 활용하여 보험상품의 판매에 적극적으로 활용한 점(가입설계서에 문화생활자금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명시) 등이 인정되었다. 결과적으로 보험수익자의 “문화생활자금” 청구기간은 만기 시까지이며, 이 금원에 부리되는 이자 즉 가산금의 정산은 청구 시에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으로 주 권리인 문화생활자금의 청구가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종 권리인 가산금 청구의 소멸시효가 기산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나, 중도지급을 청구하지 않음으로써 만기에 고리의 환급금을 수령하겠다는 선택을 한 것이므로 이는 부작위에 의한 권리행사에 해당하여 소멸시효가 기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소 파격적으로 보이는 이 결정에는 부작위를 권리행사로 인정한 면이 있어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이는 보험자가 상품의 가입설계서에 중도지급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미수령 중도지급금(문화생활자금)에 복리이자를 부리하여 만기환급금에 가산함으로써 고이율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내용을 기재한 것이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 애초에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중도지급을 신청할 권한과 중도지급을 포기하는 대신 복리이자를 부리한 만기환급금을 신청할 권한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약관의 내용에 비추어 보험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지급을 청구하지 않는 것이 부작위를 통한 청구권의 행사로 보아 소멸시효를 다룰 여지가 없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권리행사를 했으므로 소멸시효를 논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조정번호 제2017-14호 사안의 경우 약정을 통해 가산금의 부리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을 전제로 결정하였으나, 본 사안의 경우 보험금인 연금의 청구가 문제가 된 사안으로 생존연금을 청구하지 않고 가산금을 부리하는 것이 약정으로 보장된 선택권이라고 볼 수는 없다. 생존연금은 보험사고(생존)가 발생하여 연금을 개시한 이상 연금의 지급이 완료되거나 피보험자에게 다른 보험사고(사망 또는 재해 등)가 발생할 때까지 보험자는 약정한 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신청인은 초회생존연금을 신청함으로써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였으므로 가산금의 부리라는 '선택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여지도 없다. 본 사안의 경우 피신청인은 가산금의 소멸시효를 주장하고, 신청인은 이러한 주장이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등 논점이 가산금에 맞추어져 있으나 사실상 중요한 논점은 가산금의 소멸시효가 아닌 보험금(연금)청구권의 소멸시효이다. 보험금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종속된 권리인 가산금의 청구권도 당연히 소멸하기 때문이다.

IV. 사안의 검토

1.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문제

문제가 된 사안의 계약이 기본적으로 연금보험계약이고, 이러한 부분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연금으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생존연금과 같은 개념인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또한 60세의 생존을 보험사으로 규정하고, 사망 시 까지 연금을 지급한다).³⁴⁾ 만약 별도의 규정이 존재한다고 한다면, 이는 분할 지급에 대한 상법 규정에 위반할 소지가 있는 약관이 될 것이다. 본 사안의 신청인은 연금의 개시시점인 제2보험기간의 시기(時期)에 생존하여 초회 보험금 즉 생존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험금청구권의 행사를 완료한 것이다. 생존보험금은 분할지급인 연금으로 지급받기로 하였으므로 매 연금 지급일에 피신청인(보험자)이 연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할 뿐 신청인이 재차 권리행사를 해야 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보험료의 분할 납부와 보험금의 분할 지급은 편의상 그 방법을 정한 것일 뿐, 보험료기간이나 보험기간은 그 자체로 하나의 단위로서의 기간을 의미한다.³⁵⁾ 보험료와 보험금은 전체의 위험을 기준으로 전체보험료 또는 전체보험금을 판단해야 하며, 분할지급을 이유로 매 지급 시 마다 별개의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³⁶⁾ 본 사안에 있어 신청인은 제2보험기간 시작 시점에 생존연금에 대한 청구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소멸시효를 다룰 이유가 없다. 따라서 보험수익자는 2회차 생존연금 부터는 보험자의 통지를 받고 보험금(연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족하다.

34) 국민연금법 제61조(노령연금 수급권자)

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대하여는 60세(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가 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노령연금을 지급한다.

35) 김은경, “보험계약 무효시 보험료반환청구와 소멸시효”, 강원법학, 제35권,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 2012.02, 434면.

36)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612 판결은 “무효인 보험계약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반환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보험료를 납부한 때에 발생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보험료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보험료를 납부한 때부터 진행한다고 볼 것이다.” 라고 하여 분할납부한 보험료의 반환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각 분할 납부 시점으로 보았으나, 이는 보험료와 보험금은 전체위험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해당 청구권은 각 청구권발생 시점이 각각 보험계약체결시점과 보험사고발생시점으로 특정되어 있다는 점, 지급방식은 편의상 분할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 등 보험계약의 본질적 특성을 반영하지 아니한 한계가 있다.

사안에서 보험자는 수익자가 생존연금지급을 청구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연금청구권이 각 발생일로부터 시효로 소멸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법률로 3년이 정해진 바, 본 건 계약의 경우 문제가 된 2회차 이후 생존연금이 아니라 초회차 생존연금 부터 신청하지 않았다면, 생존연금의 소멸시효는 제2보험기간의 개시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3년 후에 소멸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생존연금은 생존보험금의 분할지급에 해당하므로 보험금청구권은 법률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해야 한다. 생존연금의 보험사고인 '생존의 본질적 특성을 고려하면 보험금청구는 초회 신청으로 족하다. 초회차 이후에 새로운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보험자는 보험금을 분할 지급(연금)할 의무가 있을 뿐이다. 다만, 이후 피보험자의 사망 또는 재해리는 본질적으로 다른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에게 별도의 통지의무를 이행해야 함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고, 피보험자의 사망 또는 재해발생 즉시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해당 보험사고의 보험금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를 가지며, 특히 사망의 경우 제2보험기간 중의 사망은 별도의 지급사유로 규정하여 사망보험금을 정하고 있으므로 보험수익자는 통지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사망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생존보험금을 수령할 경우 부정수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2. 가산금의 소멸시효 문제

본 사안에서 당사자가 문제로 삼았던 이자의 부리 즉 가산금의 소멸시효를 논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요한 요건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 우선, 문제가 된 청구 부분인 생존연금은 만기 환급금의 성격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보험금이므로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적용대상이라는 점이다. 상법 제727조 제2항의 분할약정에 해당하는 인보험이 연금보험이다. 연금보험은 인보험의 지급방식에 특성을 둔 보험으로 보험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특성으로 한다.³⁷⁾ 따라서 본 사안의 생존연금은 해당 보험계약이 약정한 보험금이다. 즉 본 사안의 생존연금은 보험금에 해당하므로 보험금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상법 제662조)가 적용된다. 두 번째로 보험수익자가 초회 생존연금을 청구하여 수령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아야 한다. 발생한 보험금 청구권을 실제로 행사한 점, 양 당사자

37) 김은경, 전게서, 668면; 정찬형, 전게서, 785면.

모두 이를 분명히 인식한 점, 생존연금을 수령하였다는 점은 이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때 주장된 소멸시효의 완성과는 논의의 방향을 달리 하는 요인이다. 이 때문에 본 사안은 가산금의 소멸시효를 다투기 이전에 주 권리인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다투어야 하는 문제가 되었다. 약관은 생존연금을 매년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매년 새로운 보험금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인지, 보험금 지급의 무만 존재하는 상태에서 분할 지급을 위한 절차적 행위에 불과한지를 따져 보아야 했다. 세 번째로 본 사안의 가산금은 선택할 수 있는 약정된 권리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가산금에 대한 본 사안의 약관 제23조 제3항과 제6항을 보면,³⁸⁾ 가산금의 정산 기간을 실제 보험금의 지급일까지로 정하고 있고, 그 전제로 약관 제22조의 보험금 청구를 규정하여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한 후에 보험금의 지급지체(이행지체)에 대한 지연이자 개념으로 가산금을 부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보험수익자가 가산금 부리를 통한 금액 증가의 이익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보험수익자의 보험금 청구 이후에 보험자의 사정으로 보험금 지급이 지체된 경우 그 사정의 내용에 관계없이 보험금 지급기일(서류접수 후 3일)부터 실제 보험금지급일까지의 기간 동안 지연이자를 지급한다는 내용이므로, 보험수익자의 선택권이 아닌 보험자의 의무를 정한 약관 조항에 해당한다. 지급지체가 발생한 후 생존보험금만 지급하고 보험수익자는 지연이자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청구권을 별도로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477조, 제479조).

위와 같이 약관에서 지급기일(3일 이내)에 기간을 둔 경우, 소멸시효 기산점이 지급기일의 약정에 영향을 받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견해가 나뉜다.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지급기일을 약정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기산점으로 하고,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금액이 정해진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날을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³⁹⁾가 있다. 이에 따르면 소멸시효 기산점의 기준(민

38) 해당 보험계약의 보험금지급에 관한 약관은 다음과 같다.

제23조(보험금 등의 지급)

③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⑥ 생존연금, 배우자연금, 여행자금, 배우자 여행자금, 장수축하금, 배우자 장수축하금, 제2회 이후에 지급되는 유족연금 또는 해약환급금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정이율 +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법 제166조 제1항)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란 권리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보험사고의 발생 시점은 보험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시점 이므로 보험수익자가 구체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을 근거로 한다. 이에 반해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⁴⁰⁾는 지급기일은 보험금 지급을 위한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아, 해당 약관조항은 보험자의 지체 책임이 생기는 시기 즉 이행기를 정한 것이지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와는 아무 관계없는 규정이라고 한다. 전자의 견해를 이행기설이라 하고 후자의 견해를 보험사고발생시설이라 하는데 후자가 우리 판례의 기본적 입장이다.⁴¹⁾ 사건으로는 소멸시효의 법리에 충실한 전자의 견해에 원칙적인 설득력이 있으나, 보험금청구권의 특성상 후자의 견해와 같이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 전자의 견해는 보험보상의 일반적인 형태가 보험사고 발생의 통지를 받은 후 손해사정을 거쳐 보험금액이 확정되는 방식 즉 부정액보험을 전제로 했을 때 강한 타당성을 얻는다. 그러나 보험은 유형에 따라 정액보험과 부정액보험으로 분류되고, 손해보험은 부정액보험과 정액보험의 형태를 모두 취하고 있으며, 특히 인보험의 경우 보험사고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보험금액을 미리 정해 놓은 정액보험으로 체결된다. 때문에 부정액보험만을 전제로하면 보험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게 된다. 정액보험의 보험금청구권은 그 내용이 이미 확정된 상태에서 행사 시점만 도래하지 않은 정지조건부 권리에 해당하므로 보험사고가 발생함으로써 보험금청구권은 효력 있는 권리가 된다(민법 제147조 제1항). 따라서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 발생으로 소멸시효가 진행되며, 보험자의 지급지체는 약관이 정한 지급유예기간 경과 시에 발생한다. 그러므로 본 사안의 경우 서류접수일로부터 4일 이후부터 지급지체가 시작되어 지급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약정에 따른 가산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가산금액은 실제 보험금의 지급이 이루어지는 날 비로소 구체화되므로 가산금의 소멸시효는 실제 보험금의 지급이 이루어지는 날 즉 보험금 지급일로부터 기산되는 것이다.

한편 본 사안의 가산금의 부가기간에 대해 살펴보면, 생존연금의 미지급은 피

39) 이상은 정찬형, “최근 한국 상법 보험편의 개정내용에 관한 연구”, 금융법연구, 제14권 제1호, 한국금융법학회, 2017, 94-95면 이하 참조.

40) 김선정, “일본 보험법개정에서의 보험금지급채무의 이행기와 지급지체”, 보험학회지, 제85집, 한국보험학회, 2010, 183-186면.

41) 장덕조, “2016년 보험법 중요 판례”, 인권과 정의, 464호, 대한변호사협회, 2017.03, 168면.

청구인이 생존연금의 본질을 오해하여 발생한 사안으로, 미지급연금액에 대한 가산금은 연금의 지급기일에 비로소 정산될 수 있는 것이다. 지급 이전에는 가산금에 대한 권리가 추상적으로 존재할 뿐 구체적인 권리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기산되지 않는다. 즉 약관 제23조 제3항의 가산금에 대한 권리는 별도로 청구 가능한 개별 권리가 아니라 미지급생존연금청구권에 부종된 권리로 미지급생존연금의 지급 시에 비로소 가산금이 구체화 되므로, 생존연금의 지급행위가 존재하지 않으면 가산금의 액수를 특정할 수 없어 소멸시효가 기산될 수 없다. 만약 신청인이 생존연금의 초회 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생존연금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논하였을 것이나, 본 사안에서는 신청인이 생존연금을 청구하고 수령하였으므로, 보험금의 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아 신청인의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를 논할 이유가 없다. 가산금에 대해서 보험자는 약관 제23조 제3항에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로 그 기간을 정하고 있으므로 가산금의 정산 시점은 기간의 정함 없이 실제로 보험자가 생존연금을 지급하는 날이며, 그 기간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가산금이 부리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생존연금 지급지체 시 가산금의 부리

보험금청구권은 쌍무계약인 보험계약의 법적 성질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는 채무로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 민법상 이행불능, 이행지체, 불완전이행으로 구분하는 채무불이행의 유형 중 보험금 미지급 문제는 이행지체에 해당한다. 민법은 채무불이행의 경우 채권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민법 제390조). 따라서 보험자가 보험금의 지급을 부당하게 거절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지체하고 있음이 입증되면, 보험자는 계약상 채무인 보험금지급의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며, 채권자인 보험수익자는 통상의 손해로서 지연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⁴²⁾ 현행 상법 상 보험금 청구권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약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행사가능한 권리가 된다(상법 제638조).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의무는 보험사고의 통지를 받은 후 구체화 된다. 상법 제658조는 지체없이 보험금액을 정하고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험금의 지급시

42) 이진수, “보험금지급지체의 손해와 보험자의 의무”, 상사판례연구, 제23권, 2010, 22면.

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때문에 현행 상법 규정은 보험금 지급지체로 인한 보험자의 책임문제를 규율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지급지체, 지급거절 등과 같은 불공정행위를 제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견해⁴³⁾도 있다. 실무적으로는 연금보험계약의 경우 보험자의 이행지체 즉 지급지체시에는 지체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이자를 적립한 금액을 보험금에 가산하는 약정을 약관으로 작성하여 지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

본 사안에서 문제가 된 가산금은 생존연금의 지급지체로 발생하였다. 해당 상품의 약관⁴⁴⁾에 따르면, 보험금의 지급기일은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이며(상품약관 제23조 제1항), 생존연금의 지급사유 즉 보험사고인 생존지점(연금개시일)의 다음날부터 제1항의 지급기일(서류접수일로부터 3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예정이율에 1%의 연단위 복리이자를 가산하고(상품약관 제23조 제6항), 연금의 청구일로부터 3일내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이 이루어지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는 것(상품약관 제23조 제3항)으로 약정하고 있다. 이때 상품약관 제23조 제3항의 가산금은 생존연금의 지급지체를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기산될 이유가 없다면, 가산금의 소멸시효도 기산될 이유가 없다. 만약 보험금의 지급지체가 있는 후에 가

43) 이원정, “영국법상 보험금의 지급지체에 대한 보험자의 책임”, 한국해법학회지, 제37권 제2호, 한국해법학회, 2015, 318면.

44) 해당 보험계약의 보험금 지급에 관한 약관은 다음과 같다.

상품약관 제23조(보험금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22조(보험금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드리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일 이내에 보험금을 드리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제15조(가입자의 고지의무)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등에 대한 회사의 조사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④ 이 약관에 의한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합니다.

⑤ 회사는 생존연금, 배우자연금, 여행자금, 배우자 여행자금, 장수축하금 및 배우자 장수축하금의 지급시기가 도래할 때에는 도래일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알려 드립니다.

⑥ 생존연금, 배우자연금, 여행자금, 배우자 여행자금, 장수축하금, 배우자 장수축하금, 제2회 이후에 지급되는 유족연금 또는 해약환급금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정이율+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산금을 제외한 보험금이 지급되었다면, 지급지체를 이유로 가산금을 별도 청구할 권리가 발생한다. 이때 가산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보험금 지급일로부터 기산되며, 부종성의 원리에 따라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인 3년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4. 가산금 소멸시효의 기산점

연금보험상품에 따라 제2보험기간(연금이 지급되는 기간)을 ①특정시점(예: 5년, 10년, 20년)까지의 확정기간으로 설정하거나(확정연금) ②단순히 피보험자의 생존 기간으로 정하는 경우, ③사안과 같이 종신으로 하되, 주피보험자의 사망에 관계 없이 연금지급 보증기간을 설정하거나(보증부종신연금), ④피보험자의 생존 동안 적립액의 이자를 연금으로 지급하다가 사망 한 경우 적립액을 유가족에게 지급하도록(상속연금) 정하는 등, 연금의 지급기간 및 방식이 상이하지만, 약관의 문언 자체는 유사한 경우⁴⁵⁾가 많은데 이 경우 해당 연금보험상품별로 지급기일까지의 가산금에 대하여 소멸시효 적용에도 차이가 있는지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민법은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민법 제166조 제1항)고 하고, 판례는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그 권리의 존부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고 하여 권리의 발생 및 권리의 행사가능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⁴⁶⁾ 추상적인 권리가 있다고 하여도 내용이나 시기가 확정되지 않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는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되어 소멸시효가 기산될 수 없다고 보고 있다.⁴⁷⁾ 특히 보험금청구권에 대해서는 약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권리가 구체화 되는 시점을 기산점으로 하는 것으로 일관되게 판결하고 있다.⁴⁸⁾ 이에 비추어 보면

45) 대체로 “연금 지급사유발생 익일부터 약관규정에 따른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특정이율(예정이율 또는 예정이율+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한다.” 와 같은 문언을 사용한다.

46)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15865 판결.

47)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0206 판결.

“가산금” 또는 “이자” 는 약정급여 또는 보험금의 지급 시점에 구체화 되는 것으로써 특히 그 대상이 중도지급의 포기에서 기인한 약정급여(문화생활자금 등)일 경우에는 ‘선택권’⁴⁹⁾의 내용이 구체화 된 시점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때 중도지급에 대한 권리(선택권)는 행사가능 시점에 기산될 것이나 중도지급을 포기하고 만기환급금의 가산금을 선택할 경우, 가산금액은 보험기간의 만기시에 비소로 확정되므로 가산금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보험기간의 만기가 될 것이다. 보험금의 미지급으로 인한 가산금의 경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인 3년 이내에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 한 후 실제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비소로 가산금을 구체화 할 수 있으므로 보험금 청구 시점과 관계없이 보험금의 지급 정산 전에는 가산금의 소멸시효가 기산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부종성의 원리를 적용하면 보험금 가산금의 미지급 시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된다.

V. 결론

본 사안은 연금보험 보험사고의 특성, 연금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보험금에 부리되는 가산금(이자)의 소멸시효, 약관의 해석원칙 및 소멸시효 주장의 권리남용 문제 등 다수의 논점이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사안으로 연금보험의 본질적인 특성에서 비롯한 사례라는 특이점이 있다. 신청인은 가산금의 소멸시효 적용에 대한 피신청인의 통지를 받고, 이를 계약 위반이라 여겨 피신청인에게 항의한 내용을 보면, 계약의 체결 당시에 생존연금을 미수령하여 복리이자를 적용

48)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62490 판결;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다30398 판결;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25432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35620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27978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다95847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다16558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다34693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101776 판결;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다53198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7870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581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7다83991 판결;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7500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44327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9467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14340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다47886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19624 판결.

49) 조정번호 제2017-14호의 소위 ‘선택권’의 경우 문언해석에 따라 보험금청구권이 아니라면,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인 3년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상사채권 소멸시효인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받아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저축성 보험이라는 설명으로 마케팅을 한 자료 등이 없고, 만기환급금의 선지급이 아닌 보험금에 해당하는 연금에 부리되는 가산금이 문제가 된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초회 생존연금에 대해 청구권을 행사한 점, 연금보험의 보험금청구권의 성질에 관한 별도의 고려가 필요한 점 등은 본 사안만이 가지는 특이한 사항으로 사실관계의 판단 및 법률 해석에 중요한 논점이다.

생존연금은 생존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본질이므로 초회 생존연금을 청구한 것으로 청구권 행사를 완료 하였으므로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논할 이유가 없다. 본 사안에서 보험자는 주 권리인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최대 3년까지 가산금(이자)를 부리하는 것을 의도한 것으로 보이나,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보험사고인 '생존과 지급 방식인 '연금의 원론적인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 주장이다. 실무적으로 보면, 신청인은 이미 초회 생존연금을 신청하여 수령하였으므로, 보험자는 이미 보험수익자의 보험금 수령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보험자는 생존 연금을 보험수익자가 초회 청구에서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차회차부터 연금을 지급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만약 신청인의 계좌정보가 변경되었다거나 한 경우에도 본 건 약관 제23조 제5항에서는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을 알릴의무를 규정하였으므로 이때에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다. 종합하여 보면, 신청인은 초회 청구를 한 것으로 청구권을 행사하여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논할 이유가 없으며, 이후 수령⁵⁰⁾을 거부한 적이 없고, 보험자는 생존연금의 지급을 수 년 간 지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생존연금의 지급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미지급 보험금에 부리되는 이자 즉 가산금에 대한 소멸시효 또한 기산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아울러 생명보험계약 및 생존연금보험계약 약관의 보험금 지급사유 조항에 보

50) 본 사안에서 보험자는 신청인이 연금의 수령을 거부했다고 항변하였는데 청구와 수령은 본질적으로 다른 행위이다. 청구는 본인이 가진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행사 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을 것을 전제로 하며, 상대방의 특별한 행위를 요하지 않는다. 반면에 수령이라는 행위는 지급이라는 행위를 전제로 하므로 상대방의 지급시도 없이 수령거부가 존재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보험자가 지급시도를 하였으나 수령을 거부하기 위해 계좌를 막아 이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거나, 보험자가 현금으로 지급하려 방문하였으나 이를 알면서 거부하는 등 최소한의 수령거부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사실관계가 존재해야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험금이 아닌 지급금을 함께 적시하는 것은 반드시 수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본다. 보험금이란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금원인데 반해 상품별로 혜택을 부과하기 위해 보험사고와 관련없이 또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요건으로 하여 지급하는 금원은 수혜성 금원이므로 별도의 약관 조항을 만들어 보험금과 혼동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방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창기, 「보험학원론」, 문우사, 2015.
- 김은경, 「보험계약법」, 보험연수원, 2016.
- 박세민, 「보험법」, 박영사, 2017.
- 이기수/최병규/김인현, 「보험해상법」, 박영사, 2015.
- 임용수, 「보험법」, 법률정보센타, 2006.
- 정동윤, 「상법(하)」, 법문사, 2008.
- 정찬형, 「상법강의(하)」, 박영사, 2016.
- 한기정, 「보험법」, 박영사, 2017.
- 김선정, “일본 보험법개정에서의 보험금지급채무의 이행기와 지급지체”, 보험학회지, 제85집, 한국보험학회, 2010.
- 김은경, “보험계약 무효시 보험료반환청구와 소멸시효”, 강원법학, 제35권,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2.02.
- _____, “보험약관 내용구성의 책임”, 이주법학, 제10권 제1호, 2016.
- 박세민, “상법 제735조의2(연금보험) 조문의 해석상 문제점과 그 개정 방안에 관한 연구”, 경영법률, 제18권 제1호, 한국경영법률학회, 2007.
- 서종희,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대한 고찰”, 일감법학, 제37호,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06.
- 이원정, “영국법상 보험금의 지급지체에 대한 보험자의 책임”, 한국해법학회지, 제37권 제2호, 한국해법학회, 2015.
- 이진수, “보험금지급지체의 손해와 보험자의 의무”, 상사판례연구, 제23권, 2010.
- 장덕조, “보험금청구권과 소멸시효”, 금융법연구, 제13권 제3호, 한국금융법학회, 2016.
- _____, “2016년 보험법 중요 판례”, 인권과 정의, 464호, 대한변호사협회, 2017.03.
- 정찬형, “최근 한국 상법 보험편의 개정내용에 관한 연구”, 금융법연구, 제14권 제1호, 한국금융법학회, 2017.

<Abstract>

The extinctive prescription of insurance claim and additional dues on life contingency insurance

Rim, Che Oug

Normally annuity insurance against financial loss after a certain age refers to the insurance arrangements to receive funds paid periodically during the life of the insured. A representative annuity insurance is the life contingency insurance. The life contingency insurance is an insurance contract that is established as an insurance accident in which the state of the insured person, that is, the state of survival, continues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There is no such type of insurance contract for non-life insurance, and life contingency insurance is the only one in life-insurance. As a result, life contingency insurance is a special insurance contract that, unlike all other insurance contracts, is the only type of insurance that has no status change. Nevertheless, there is no specific provisions for survival insurance on the Commercial Law besides the provision that survival can be an insurance accident, and discussions on life contingency insurance are also insufficient. In this paper, I would like to consider many issues related to the payment of insurance claims such as the legal nature of insurance accidents, the starting-point of computing extinctive prescription on insurance claim, and the additional dues on payment of insurance, based on recent cases.

Key Words : Life Contingency Annuity, Annuity Insurance, Insurance Claim, Extinctive Prescription, The starting-point of computing extinctive prescription, Late Payment